

일반직공무원 특정감사 경고처분취소 소송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1심]2021. 7. 15. 원고패	비고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재직 중인 교육행정공무원으로 2018.7.1. ~ 2020. 12. 31.까지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학교 대상으로 2020. 7.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및 학교회계 관리 소홀(세입세출외현금 시재불일치, 교직원·강사 세금 등 원천징수 금액 지연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이자 학교회계 미편입 등)로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음. ○ 이에 원고는 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을 결정한 바, 피고의 경고 처분은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한다며 소를 제기함.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짐. 회계장부 정리가 지연되어 장부와 통장의 실제 잔액이 불일치하도록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됨. ○ 과거 수 차례 부당 업무처리로 인한 주의조치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면 과거 행정실장에 대한 처분에 비해 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특정감사에 따른 경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